HOBAN
SUMMIT
송파 I

위례신도시 A1-2BL 호반 써밋 송파 I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 12. 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2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에 의거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8.12.2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 당첨 · 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 시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는 해외거주 인정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 적용사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본인과 세대원 포함),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해당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남은 주택은 1순위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순으로 각각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때 1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 아파트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② 본 아파트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을 것
    ③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 1주택자가 위 요건 중 ②에 따른 신고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른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호의3 참조). 또한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가점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illegible]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시공회사	(주)호반산업	200111-0308994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사이버 홍보관 : www.hobansummit-sp1.co.kr
▣ 분양문의 : ☎ 1566-322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오시는 길 | 호반건설 신사옥 홍보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호반 써밋 송파 I A1-2블록 (108㎡ 총 689세대)

시행 | 시공 호반산업 **1566·3220**